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1학년도 제4차)

구 분	내 용
일 시	2021. 6. 22(화) 16:00
장 소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황성하, 안은미, 이세중, 김영태, 김동호, 김세정, 박광림
불참자	강지웅, 김봉석, 김웅삼, 강승준

■ 안 건

- 제1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
- 제2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
- 제3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심의
- 제4호 안건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개회선언(16:00)

- 의장 : (전략기획팀의 성원 보고 후)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 안건심의

- 제1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
 -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한 설명을 교무지원팀장에게 요청하다.
 - 교무지원팀장 : K-MOOC 강좌 학점, 학군단 관련 규정 정비, 학제개편 등에 대한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 의장은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에게 이의여부를 묻고 이세중 의원 동의, 박광림 의원 재청 후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제1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
 -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한 설명을 대학원행정팀장에게 요청하다.
 - 대학원행정팀장 : 수업연한 단축, 입학허가취소 항목 변경, 휴학 일부항목 변경,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체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 이세중 의원 : 학위논문대체 수료자의 KCI급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와 관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다.
 - 대학원행정팀장 : 학위논문대체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시행세칙 제42조 2항의 각각 별도

원 본 대 조 필



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함을 설명하다.

- 의장은 대학원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에게 이의여부를 묻고 김세정 의원 동의, 김영태 의원 재청 후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제2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안건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심의

-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대한 설명을 대학원 행정팀장에게 요청하다.
- 대학원행정팀장 : 석사학위논문대체와 관련한 “수료자연구생 등록” 내용 명시 등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 의장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에게 이의여부를 묻고 안은미 의원 동의, 김동호 의원 재청 후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안건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략기획팀장에게 요청하다.
- 전략기획팀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가 및 지자체 신규사업, 기존국책사업 증감분, 2020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반영, 기타 수입 증감분 등 예산규모, 수입 및 지출내용을 설명하고 평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 의장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에 대하여 참석의원들에게 이의여부를 묻고 이세중 의원 동의, 김영태 의원 재청 후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제4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폐회선언(17:30)

-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참석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폐회를 선언하다.

평 의 원 회 학 인										
황성하 (의장)	김영태 (부의장)	안은미	강지웅	이세중	김봉석	김동호	김세정	박광림	김응삼	강승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원 본 대 조 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1. 6. 24(목) 16:00	장 소	본관 2층 회의실
참 석 위 원	정성화(위원장), 최진호, 주일권, 백대현, 박광림, 한지오, 이재민, 서동환		
행정지원	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원		

□ 안 건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회의 내용

○ 개회선언 : 전략기획팀의 성원보고 후 위원장은 참석위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2021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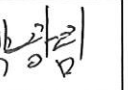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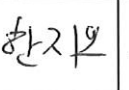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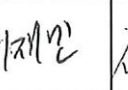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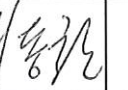
○ 안전 심의

<안전>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위원장 : 안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전략기획팀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자료를 설명하다.
- 위원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 기관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본예산에 반영된 국책사업 등 사업비 증감액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기타 부서 수입 증감분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 : 참석위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데 대해 의견을 묻다.
- 주일권 위원 : 동의하다.
- 한지오 위원 : 재청하다.
- 참석위원 : 전원 동의하다.
- 위원장 :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에 따라 따라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폐회 선언(17:00)

○ 위원장은 참석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타 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확인								
정성화	최진호	백대현	주일권	박광림	한지오	이재민	서동환	장혜열
								불참
작성자	전략기획팀장 조 봉 수			확인자	위원장(기획처장) 정 성 화			

학 교 법 인 제 한 학 원

제309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인원	7인	2인

1. 일 시 : 2021년 6월 30일(수) 낮12시 (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6월 22일)

2. 장 소 : 부속대구한방병원 2층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 임원

- 이사(7인) : 기우항, 변정환, 변창훈, 최순돈, 이재석, 김수봉, 이진환

- 감사(2인) : 남대하, 김도연

○ 결석 임원 : 정동희

○ 참석자 : 법인(사무국장), 대학교(교학처장, 기획처장)

4. 안 건

- 제1호 : 교원 임용 건

- 제2호 : 규정 개정(안) 승인 건

- 제3호 :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기타안건

5. 회의내용

이 사 장 : 이사정수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본 법인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309차 이사회 개회 선언을 하고, 개회에 따른 인사를 하다.

- 수리 안건 : 전차 이사회 회의록

이 사 장 : 제308차 이사회 회의록을 간사가 낭독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수리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호 : 교원 임용 건

이 사 장 : 교원 임용 건을 상정하고 교학처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 신규임용 건-

교학처장 : 제청 대상자 명단, 단계별 심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설명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함을 보고하다.

이사 전원 : 연구실적등 검토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교학처장의 답변이 있는 후,

김수봉이사 : 원안대로 신규 임용할 것을 동의하다.

최순돈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 사 장 :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신규임용은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서명]	기우항	이재석
------	-----	-----

☐ 신규임용 대상자(비정년교원)

성명	임용사항			비고
	소속	직급	임용기간	
성태종	푸드케어학부	조교수	2021.09.01.~2022.08.31.	강의연구병행교원
강효찬	임상병리학과	조교수	2021.09.01.~2022.08.31.	강의중점교원
이희수	메디푸드HMR산업학과	조교수	2021.09.01.~2022.08.31.	강의중점교원

- 재임용 건 -

교학처장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재임용 제청 내용을 설명하다.

이사 전원 : 질의 및 검토가 있는 후,

김수봉이사 : 교원 재임용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최순돈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붙임1.(재임용)과 같이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승진임용 건 -

교학처장 : 교원 승진임용 제청 내용을 보고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 승진임용을 제청함을 설명하다.

이사 전원 : 질의 및 검토가 있는 후,

최순돈이사 : 교원 승진임용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이재석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승진임용 대상자(정년교원)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임용직급	임용기간	
임상병리학과	부교수	장정현	교수	2021.09.01.~정년까지	

- 파견 건 -

교학처장 : 교원 파견연장과 관련하여 파견 기관 및 기간 등 파견 내용을 설명하다.

변창훈이사 : 동의하다.

이진환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파견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파견임용 대상자(파견연장)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한의학과	부교수	정현정	(재)통합의료진홍원 파견근무를 명함 (2021.09.01.~2022.08.31.)	최초파견 2015.9.1

부속 2/28 6/27/23

- 휴직 건 -

교학처장 : 휴직 제청 내용을 보고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제청하였음을 설명하다.

변정환이사 : 원안대로 휴직할 것을 동의하다.

이재석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 사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휴직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휴직기간	비고
뷰티케어산업학부	부교수	김진희	2021.07.01.~2021.11.30. (최초휴직일 2021.04.01.)	휴직연장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2021.05.24.~2024.05.19.	국가기관한시적임용

- 면직 건 -

교학처장 : 면직 제청 내용을 보고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제청하였음을 설명하다.

변창훈이사 : 원안대로 면직할 것을 동의하다.

이재석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 사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붙임2.(면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 규정 개정(안) 승인 건

이 사 장 : 대학교 규정 개정(안) 승인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기획처장 :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재석이사 : 원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동의하다.

김수봉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 사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붙임3.(대학규정개정)과 같이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 예산(안) 심의 건

기획처장 :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관별 주요내용, 주요사업 등을 설명한 후, 예산(안)에 의거 수입·지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이사 전원 : 예산(안)에 의거 각 항목별로 질의·검토 및 논의가 있는 후,

이진환이사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변정환이사 : 재청하다.

이사 전원 : 찬성하다.

이 사 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지출 각각 90,001,567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재석이사 > 2/29/23

- 기타 안건

가.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호 안건 중 제
임용탈락자명단 및 면직일부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다.

나.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 임원 선출 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간서명 임원에 기우항이사장, 변정환이사, 이재석이사를
선출하다.

6. 폐회 선언

이 사 장 : (기타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것으로 제309차 이사회를 모두 마쳤음을 선언하다. (14:30)

기	우	항	이	재	석
---	---	---	---	---	---

2021. 6. 30.

위 사실을 확인함.

이사장 기우항 기우항 이 사 변정환 변정환

이 사 변창훈 변창훈 이 사 최순돈 최순돈

이 사 이재석 이재석

이 사 김수룡 김수룡 이 사 이진환 이진환

감 사 남대하 남대하 감 사 김도연 김도연

(붙임1) 재임용

1. 정년교원

연번	소속	직 급	성명	임 용 사 항		비고
				임용직급	임용기간	
1	재활치료학과	부교수	최동식	부교수	2021.09.01. ~ 2027.08.31.	
2	힐링산업학부	부교수	이양숙	부교수	2021.09.01. ~ 2027.08.31.	
3	물리치료학과	부교수	이미영	부교수	2021.09.01. ~ 2027.08.31.	

2. 비정년교원

가. 강의연구병행교원

연번	소속	직 급	성명	임 용 사 항		비고
				임용직급	임용기간	
1	임상병리학과	조교수	김다현	조교수	2021.09.01. ~ 2023.08.31.	

나. 산학협력중점비정년교원

연번	소속	직 급	성명	임 용 사 항		비고
				임용직급	임용기간	
1	화장품공학부	조교수	이승묵	조교수	2021.09.01. ~ 2023.08.31.	

3. 재임용 탈락

(붙임2) 면직

소속	직급	성명	면 직 사 항	면직일자	비고
힐링산업학부	교수	고재기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2021.08.31	장년교원
기초교양대학	교수	조수동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2021.08.31	장년교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김신호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2021.08.31	장년교원
시니어웰니스학부	부교수	이희완	정년퇴직에 따른 면직	2021.08.31	장년교원

주요교원	7	유형	이재석
------	---	----	-----

(붙임3) 대학규정개정

직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3 장 대학원·대학·학부 등 제10조(단과대학) ①~⑩ (생략) ⑩ <신설> <신설>	제 3 장 대학원·대학·학부 등 제10조(단과대학) ①~⑩ (현행과 같음) ⑩ 바이오산업대학에 K-뷰티특성화사업단을 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3조(편제)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제10조 제11항의 “바이오산업대학”을 “화장품제약대학”으로 한다.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별표 23】 K-뷰티특성화사업단 사무분장표		
부서명	단위업무명	세 부 사 항	부서명	단위업무명	세 부 사 항
<u><신설></u>	<u><신설></u>	<u><신설></u>	K-뷰티 특성화 사업단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운영	1.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2.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수행 3.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결과보고 4. 특성화학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5.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제 위원회 운영 6. 참여기업 지원 및 관리 7. 기타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
<u><신설></u>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21】 K-뷰티특성화사업단 위임전결권 구분표				
	부서명	단위 업무명	세 부 사 항	총장	전결권자 교학부 총장 단장
	K-뷰티 특성화 사업단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운영	1.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2.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수행 3.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결과 보고 4. 특성화학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5.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제 위원회 운영 6. 참여기업 지원 및 관리 7. 기타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	○	○ ○ ○ ○ ○ ○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7월 21일 > 4월 12일

교직원수당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게 자녀2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원본을 매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5】 <u>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u> <table><tr><th>적용범위</th><th>학교</th><th>지급액</th><th>지급시기</th></tr><tr><td>교직원</td><td>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td><td>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td><td>3월,6월,9월 ,12월</td></tr></table> 【별표 9】 연구보조비 지급구분표 가. 연구보조비 (월지급액,단위:원) <table><tr><th>직명</th><th>총장</th><th>교수</th><th>부교수</th><th>조교수</th><th><u>전임강사</u></th></tr><tr><td>금액</td><td>619,500</td><td>466,500</td><td>429,000</td><td>393,000</td><td><u>365,000</u></td></tr></table> 나. 임상연구비 (월지급액,단위:원) <table><tr><th>직명</th><th>교수</th><th>부교수</th><th>조교수</th><th><u>전임강사</u></th></tr><tr><td>금액</td><td>1,164,000</td><td>1,056,000</td><td>960,000</td><td><u>744,000</u></td></tr></table> <u><신 설></u>	적용범위	학교	지급액	지급시기	교직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3월,6월,9월 ,12월	직명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전임강사</u>	금액	619,500	466,500	429,000	393,000	<u>365,000</u>	직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전임강사</u>	금액	1,164,000	1,056,000	960,000	<u>744,000</u>	<u><삭 제></u> <u><삭 제></u> 【별표 9】 연구보조비 지급구분표 가. 연구보조비 (월지급액,단위:원) <table><tr><th>직명</th><th>총장</th><th>교수</th><th>부교수</th><th>조교수</th><th><u><삭제></u></th></tr><tr><td>금액</td><td>619,500</td><td>466,500</td><td>429,000</td><td>393,000</td><td><u><삭제></u></td></tr></table> 나. 임상연구비 (월지급액,단위:원) <table><tr><th>직명</th><th>교수</th><th>부교수</th><th>조교수</th><th><u><삭제></u></th></tr><tr><td>금액</td><td>1,164,000</td><td>1,056,000</td><td>960,000</td><td><u><삭제></u></td></tr></table>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직명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삭제></u>	금액	619,500	466,500	429,000	393,000	<u><삭제></u>	직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삭제></u>	금액	1,164,000	1,056,000	960,000	<u><삭제></u>
적용범위	학교	지급액	지급시기																																																		
교직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3월,6월,9월 ,12월																																																		
직명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전임강사</u>																																																
금액	619,500	466,500	429,000	393,000	<u>365,000</u>																																																
직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전임강사</u>																																																	
금액	1,164,000	1,056,000	960,000	<u>744,000</u>																																																	
직명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삭제></u>																																																
금액	619,500	466,500	429,000	393,000	<u><삭제></u>																																																
직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u><삭제></u>																																																	
금액	1,164,000	1,056,000	960,000	<u><삭제></u>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